
제128회 교무위원회 안건

2021. 2. 3.

부 의 안 건

☐ 보고 안건

제1호 : 제127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 1

☐ 심의 안건

제1호 : 학칙 개정(안) 3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안 건
년 월 일	2021. 2. 3.	

제127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	위원장
제출년월일	2021. 2. 3.

제127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

1. 일 시 : 2021. 1. 7.(목) ~ 1. 8.(금)

2. 의결방법 : 서면결의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심의안건 1건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3. 참여위원 현황

○ 참여위원 : 위원장 포함 15명

4. 부의안건 및 심의결과

가. 가. 보고안건

○ 제1호 : 제126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원안의결

나. 나. 심의안건

○ 제1호 :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원안의결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안 건
년 월 일	2021. 2. 3.	

학칙 개정 (안)

제 출 자	위원장
제출년월일	2021. 2. 3.

학부·대학원 학칙 통합 개정사유 및 신규대비표

1. 개정 사유

- 학칙(학부)와 대학원통합학칙의 부분 개정으로 조항 배열이 혼재되어 있어 전면 개정 필요
- 학부·대학원의 학칙을 통합하여 내규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활용 편의성 도모
- 학과신설 및 학사운영 관련 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2. 개정 주요내용

- 학부·대학원의 학칙 조항을 통합 및 용어 변경
 - (현행) 학칙 21장 94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10장 39조
 - (개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 9장 107조
 - ※ 학부 및 각 대학원 세부운영을 관련 규정 각각의 규칙으로 위임
 - 퇴학 용어를 자퇴로 변경(제29조)
 - 강제로 제적시키는 퇴학 용어를 자퇴로 변경
 - 복적 용어를 재입학으로 통합하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제21조1항)
 - 입학금이 삭제되어 복적과 재입학이 동일하여 재입학제도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횟수 반영(기존 복적 1회, 재입학 1회 가능)
- 연합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변경(제51조2항)
 -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어 변경
- 학사과정의 정시모집 통합 선발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2항)
 - 입시 경쟁률 제고 및 우수인재 모집을 위한 계열별 통합 선발 근거 마련
-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종위원회 구성 운영 신설 (제13조)
 -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학칙에서 위임 근거 마련
- 임신·출산·육아 휴학 조항 신설(제26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3항에 따른 근거 마련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에 따른 고용학사과정 추가(제49조, 제56조)
 - 학과명칭: 고용서비스정책학과, 학위명: 고용학사, 졸업학점: 150학점
- 주전공 및 트랙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제51조1항)
 - 전공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은 학부에 대해 전공을 트랙으로 운영(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 학부(과)내 전공 및 트랙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기준 신설 (제51조3항)
 - 전공별 27학점, 트랙별 16학점 이상 다른 교육과정 편성

3. 학칙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규정사항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현, 학부·대학원 학칙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章 중심)
(학 부)학 칙	☐ 총칙 : 목적 및 교육목표·학제 및 정원·대학원·부속기관 등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입학·재입학·편입학 ☐ 휴학·복학·제적·복적 및 퇴학 등 ☐ 교과·수업·학점·졸업 ☐ 시험 및 성적 ☐ 등록금 및 장학금 ☐ 공개강좌 ☐ 학생활동 ☐ 학점은행제 ☐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 ☐ 등록·수강신청·전과 ☐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 포상 및 징계 ☐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 자체평가 ☐ 학칙개정

5. (통합)학칙 체계 및 주요내용

체계	주요내용
1장. 총칙	◆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2장. 조직	◆ 학제 및 정원 ◆ 부속기관 등
3장. 교수회·위원회	◆ 교수회 ◆ 교무위원회 ◆ 대학원위원회 등
4장. 학사일반	◆ 수업연한·재학연한 ◆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 입학·재입학·편입학 ◆ 등록·수강신청 ◆ 휴학·복학·제적·자퇴 ◆ 등록금·장학금
5장. 학사운영(대학)	◆ 입학자격·입학전형 ◆ 전부(과) ◆ 교과·수업·학점·졸업 ◆ 시험·성적 ◆ 포상·징계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 공개강좌·학점은행제 ◆ 학생활동
6장. 학사운영(대학원)	◆ 입학자격·입학전형 ◆ 교육과정·수료 ◆ 성적 ◆ 전공의 변경 ◆ 공개강좌·연구생 ◆ 주임교수·지도교수 ◆ 학생활동·상벌
7장. 자체평가	◆ 자체평가
8장. 학칙개정	◆ 학칙개정
9장. 보칙	◆ 위임사항

<붙임> 학칙 통합 개정(안) 신·구 대비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신규 대비표】

현행	개정(안)
【학칙 : 21장 94조】 제1장 총칙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 제4장 입학·재입학·편입학 제5장 등록·수강신청·전과 제6장 휴학·복학·제적·복적 및 퇴학 등 제7장 교과·수업·학점·졸업 제8장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제9장 시험·성적 제10장 포상·징계 제11장 등록금 제12장 장학금 제13장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제14장 공개강좌 제15장 교수회 제16장 교무위원회 제17장 학생활동 제18장 자체평가 제19장 학점은행제 제20장 학칙개정 제21장 보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10장 39조】 제1장 총칙 제2장 입학 제3장 등록·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 및 수료 제4장 성적 제5장 휴학·복학·제적 및 퇴학 제6장 전공의 변경 제7장 공개강좌·연구생 제8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9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10장 보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 9장 107조】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교수회·위원회 제4장 학사일반(대학·대학원) 제1절 수업연한·재학연한 제2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3절 입학·재입학·편입학 제4절 등록·수강신청 제5절 휴학·복학·제적·자퇴 제6절 등록금·장학금 제5장 학사운영(대학)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제2절 전부(과) 제3절 교과·수업·학점·졸업 제4절 시험·성적 제5절 포상·징계 제6절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제7절 공개강좌·학점은행제 제8절 학생활동 제6장 학사운영(대학원)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제2절 교육과정·수료 제3절 성적 제4절 전공의 변경 제5절 공개강좌·연구생 제6절 주임교수·지도교수 제7절 학생활동·상벌 제7장 자체평가 제8장 학칙개정 제9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 아래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아래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다원적 기술·기능을 연마하는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실천기술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고도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 제2조(각 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① 우리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 전문대학원인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통합하여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 대학원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은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은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실용적 연구와 전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기술·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제3조(과정 및 학위수여) ①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 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 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과 각 대학원과 연구원(소) 또는 각 대학원과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본 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다원적 기술·기능을 연마하는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실천기술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을 목표로 한다 ② 본 교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실용적 연구와 전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특수대학원) :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기술·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말한다 ③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④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⑤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⑥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함은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식 문구를 삭제하여 간소화 학부·대학원 교육목표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정관변경사항 반영 통합 학칙에서 사용하는 각 종 용어 정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학제 및 정원) 본 대학 학사과정의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대학원) ① 본 대학에 대학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의 학칙 및 학위수여등 대학원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학원 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별 학과와 학생정원(협동과정을 포함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각 학과에는 전공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의2(일학습병행대학) 일학습병행제 및 계약학과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일학습병행대학을 둔다. 【제8장 계약학과와 설치·운영】 제48조(계약학과와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는 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있는 학부·학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학부·학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학칙 제3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부속시설 등) ① 본 대학의 부속시설로 고용노동연수원,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학술정보원,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공학교육혁신센터, 실습공장(실습실)을 둔다. ② 교무처의 부속시설로 대학교육개발단을 둔다. ③ 학생처의 부속시설로 생활관 및 학생생활연구소를 두고, 학생생활연구소의 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상담.진로개발센터로 한다. ④ 제1항의 능력개발교육원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⑤ 제1항의 온라인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을 둔다. ⑥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 ⑦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제4조(학제 및 정원) ① 학사과정의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기 이수 후 결정하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과정의 학과 및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각 학과에는 전공을 따로 둘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일학습병행대학) 일학습병행제에 따른 일학습병행대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계약에 의한 학과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학생선발 기준,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및 운영비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부속기관) ① 본 교의 부속기관으로 생활관, 학생생활연구소,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학술정보원, 산학협력단, 공학교육혁신센터, LINC+사업단, 실습공장(실습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생활관 및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처에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담·진로개발센터로 한다. ③ 제1항의 능력개발교육원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④ 제1항의 온라인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을 둔다 ⑤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 ⑥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신설 및 학부·대학원 학제와 정원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학사과정의 정시모집 통합 선발을 위한 근거 신설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 사항을 신설한 제2장(조직)으로 흡수하고, 조문 정리 부속기관으로 명칭 변경 및 조문 보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의2(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 ① 본 대학교의 교과운영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의3(학교기업)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은 교지에 설치한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설연구기관) 본 교의 교과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본 교 교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운영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수를 통합 조항 수를 통합
【제15장 교수회】 제74조(교수회)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75조(구성) 교수회는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76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임교수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77조(의결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심의사항)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9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실기교과운영위원회, 공간·장비위원회 등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0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대학원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과 총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81조(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2조(심의의결) 교무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교수회·위원회】 제10조(교수회) ①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임교수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무위원회) ①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 공간장비위원회 등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대학원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과 총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무위원회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시간·장소를 명시하여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을 교수회·위원회로 신설 교수회 조문 수를 통합 교무위원회 조문 수를 통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3조(심의사항) ①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의2(회의록 공개) ① 회의 개최 전 적어도 7일전에 회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제33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항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학칙 제34조(임기)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학원학칙 제35조(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대학원학칙 제36조(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교무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⑩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각종위원회) 본 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위원회 조문 수를 통합 각종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마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부·과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기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집중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학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 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제15조(수업일수) 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 본 대학의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하기 및 동기 휴가 2. 개교기념일 3. 관공서의 공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하기 및 동기 휴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총장은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업일 기간 중에도 강의, 실험·실습 및 과제물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임시휴업)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부·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기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집중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대학원과정의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 3. 관공서의 공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휴업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기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있으며, 과제물 등도 부과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학부·대학원 수업일수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조문을 통합
【제4장 입학·재입학·편입학】 제12조(입학시기) 본 대학의 입학 허가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대학원학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3절 입학·재입학·편입학 제19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입학 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학부·대학원 입학시기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조문 정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8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과목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퇴학 또는 제적된 후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생은 퇴학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학원학칙 제11조(재입학) 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의 학과(전공)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대학원학칙 제12조(재입학학생에 대한 학점처리) 재입학 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 사정한다. 제19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해당 여석이 있는 학부(과)의 3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편입학 자격은 대학(교)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하고 당해 학부(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편입학자가 전적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대학원학칙 제11조의2(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학칙 11조의3(편입학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 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제21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과목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과정 재입학은 퇴학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병역의무 복무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생은 퇴학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 대학원과정 재입학생의 학점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여석이 있는 학부(과)의 3학년에 한하여 실시 2. 대학(교)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않은 자 4. 학사학위 취득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음. 다만, 편입 가능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하고 당해 학부(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② 대학원과정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남은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은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30학점까지 인정한다.	학부·대학원 재입학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학부·대학원 편입학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장 등록·수강신청·전과】 제21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별로 대학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등으로 구분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전부(과)가 확정된 학생의 등록금 차액발생시 그 금액만큼을 추가징수 또는 환불 한다. ▶대학원학칙 제13조(등록) ① 학생은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 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연구등록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2 (시간제등록) ① 수료자의 졸업요건 이수 또는 제13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며, 매학기초 30일내에 선발한다. ③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10학점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등록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취소에 관한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4절 등록·수강신청 제23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내에 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등록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학사과정 시간제등록) ① 수료자의 졸업요건 이수 또는 제35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며, 매학기초 30일내에 선발한다. ③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10학점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등록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강신청)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과는 별도 절로 이관하고, 학부·대학원 등록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조문제목 수정 조문 정리
【제6장 휴학·복학·제적·복적 및 퇴학 등】 제27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수행,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재입학 및 복적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수행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통산 휴학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치료(해당병원장의 진단서 첨부) 2. 해외연수(당해 연수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3. 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제대회 참가 또는 외국파견(증빙서류 첨부) ③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은 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절 휴학·복학·제적·자퇴 제26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과정 : 6학기. 다만, 질병치료·해외연수·본 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의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석사과정 : 3학기 3. 박사과정 : 4학기	복적 삭제 및 퇴학은 자퇴로 변경 - 학부·대학원 휴학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④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은 제 2항의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원학칙 제23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개 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의무 복무기간 2. 국비(교비) 장학생으로 외국 정규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3. 국외 자매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4.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③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학위과정별 통산 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상 복무의무 2. 임신·출산·육아(다만,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학사과정 : 창업(다만,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석사과정·박사과정 : 국비(교비)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국외 자매 대학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28조(복학 및 복적)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30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경우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46조의3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한다)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39조 각호 중에서 해당하는 과정의 총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5회 받은 자 6.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대학원학칙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병역의무 복무자의 경우는 전역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27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6조 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60조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5회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 6.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복적 규정 삭제 및 학부·대학원 복학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학부·대학원 제적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현행	개정(안)	
제29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학칙 제25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퇴) ① 학사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퇴학을 자퇴로 조문을 변경하고 학부·대학원 자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대학원과정 자퇴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확인 신설)
【제11장 등록금】 제58조(등록금 납부의무) 본 대학 재학생은 매 학기별로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 받은 자는 그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59조(등록금) ①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28조에 의한 재입학 또는 복적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금은 재입학 및 복적 당시의 등록금 징수기준에 의한다. ③ 등록금을 책정 할 때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등록금심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등록금의 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개시 전에 고지한다. 제61조(실험실습비 등)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외에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6조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 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3의 3. 휴학 중인 자가 졸업이나 수료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절 등록금·장학금 제3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금은 재입학 당시의 등록금 징수기준에 의한다. ④ 등록금 책정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실험실습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외에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졸업이나 수료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현, 별도의 장으로 되어있는 등록금과 장학금을 통합하고 해당 조항을 정리 조문 정리 조문 정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로 한다. 2.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등 기타 등록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등록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로 한다. 2.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등 기타 등록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등록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table><tr><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금액</th></tr><tr><td>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td><td>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td></tr><tr><td>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td><td>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td></tr><tr><td>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td><td>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td></tr><tr><td>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table>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table><tr><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금액</th></tr><tr><td>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td><td>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td></tr><tr><td>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td><td>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td></tr><tr><td>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td><td>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td></tr><tr><td>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table>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④ 제57조(징계)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2장 장학금】 제63조(지급대상)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지급중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본 학칙에 의거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과정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장학금 지급중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본 학칙에 의거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조문 보완 조문제목 수정																				

현행 제5장 등록·수강신청·전과	개정(안) 제2절 전부(과)	
제23조(전부(과)) ① 전부(과)는 2학년 또는 3학년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하되, 전출·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10 이내로 한다. ②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전부(과)의 제한)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 한다. 제25조(전부(과) 후의 재학연한)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제26조(전부(과) 이후의 과정이수) 전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학부(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교과·수업·학점·졸업 제31조(교과목구분) 교과목은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전공, HRD과정으로 편성하여 필수 또는 선택영역으로 구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②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의2(공학교육인증) ① 공학사 과정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수강과 이수) ① 각 학부(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선택 과목의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거나, 당해과목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주당 1시간의 강의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는 1주당 2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현장실습) (폐지) 제37조(교육실습) (폐지)	제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① 전부(과)는 2학년 또는 3학년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하되, 전출·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전부(과) 제한)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1조(전부(과) 후의 재학연한)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제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전부(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교과·수업·학점·졸업 제43조(교과목구분) 교과목은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전공, HRD과정으로 편성하여 필수 또는 선택영역으로 구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공학교육인증) ① 공학사 과정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수강과 이수) ① 각 학부(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선택 과목의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거나, 당해과목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48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주당 1시간의 강의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는 1주당 2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조문 정리 용어 수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제38조(외국어능력 인정) ① 본 대학 재학생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어 능력은 졸업요건 평가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과정이수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각 과정의 세부학점 요건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다만,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삭제) 3. 경영학사 과정 : 140학점 이상(다만,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삭제) 5. 학.석사연계 과정 : 140학점 이상 (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 이상) 6. (삭제) ② 제48조의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적용여부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40조(부전공, 복수전공 등)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을 이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 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부전공 2. 2개 이상의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3.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합전공”이라 한다.) 4.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제41조(부전공, 복수전공 등 이수) ①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부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으로 21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의 부전공은 1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HRD부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복수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36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연합전공으로 스페셜트랙을 운영하며, 트랙 당 이수 소요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연계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7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주전공의 인접학문분야 학부(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스페셜트	제49조(외국어능력 인정) ① 재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어능력은 졸업요건 평가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과정이수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각 과정의 세부학점 요건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공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 2. 경영학사 과정 : 140학점 이상 3. 고용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 4. 학석사연계 과정 : 140학점 이상 (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 이상) ② 제6조의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적용여부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51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학생은 소속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한다. 학부(과)에서는 주전공의 세부전공으로 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을 이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 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부전공 2. 2개 이상의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3.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4.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③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2개 이상일 경우 27학점, 세부전공인 트랙이 2개 이상일 경우 16학점 이상 서로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④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부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으로 21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의 부전공은 1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HRD부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복수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36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⑥ 스페셜트랙의 트랙당 이수 소요학점은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⑦ 융합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7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조문 정리 외국인 단서 조항 분리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에 따른 고용학사 추가 조문제목 수정 주전공 및 트랙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교육부 가이드라인 용어로 변경(융합전공) 학부(과) 내 전공 및 트랙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기준 제시(27학점/16학점)

현행	개정(안)	
랙 교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전5항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2조의 교과과정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제42조(중등학교 교직과정) (폐지) 제42조의2(학점취득특별시험) ① 본 대학의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 1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7학점 이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 및 성적취득을 인정한다. 1. 기초학력증진과정 이수자 특별시험 2.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3. 공학부(과) 기초실습능력평가 특별시험 ②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성적)은 정규학기 취득학점(성적)으로 산입하되,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의3(학석사과정 수강교류) ①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과정 또는 학사과정에서 허용하는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의 요건 및 절차, 학점의 인정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의4(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 이수(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기당 평균 20학점이상 이수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취득 3. 소속 학부(과)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주임교수의 추천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수학자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 제4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학·석사연계과정 정원과 이수대상자의 선발 및 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타 대학 학점인정) 학생이 국내·외 대학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범위 안	학부(과) 내에서는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⑧ 주전공의 인접학문분야 학부(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의 스펙트럼 교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 제3항 내지 제8항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4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제52조(학점취득특별시험) ① 본 교의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 1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7학점 이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 및 성적취득을 인정한다. 1. 기초학력증진과정 이수자 특별시험 2.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3. 공학부(과) 기초실습능력평가 특별시험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성적)은 정규학기 취득학점(성적)으로 산입하되,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사·석사과정 수강교류) ①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과정 또는 학사과정에서 허용하는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의 요건 및 절차, 학점의 인정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기당 평균 20학점이상 이수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취득 3. 소속 학부(과)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주임교수의 추천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수학자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학석사연계과정 정원과 이수대상자의 선발 및 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5조(학점 인정)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	조문 삭제 현행과 동일 용어 수정

현행	개정(안)																																				
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군복무자의 교육훈련 2.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따른 교육 3.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과정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제44조(학년구분) ① 재적학년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는 해당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본교 교과과정 이수기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table><tr><th>과정별학년</th><th>공학사 과정(150학점)</th><th>경영학사 과정(140학점)</th></tr><tr><td>1학년</td><td>38학점</td><td>35학점</td></tr><tr><td>2학년</td><td>75학점</td><td>70학점</td></tr><tr><td>3학년</td><td>112학점</td><td>105학점</td></tr><tr><td>4학년</td><td>150학점</td><td>140학점</td></tr></table> ※5학년은 건축공학부 친환경건축학전공에 한함 제45조(졸업연구) ① 졸업예정자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졸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되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이란 논문 또는 실험·실습작품을 말한다. ③ 졸업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졸업연구 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졸업)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과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과정별학년	공학사 과정(150학점)	경영학사 과정(140학점)	1학년	38학점	35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군복무자의 교육훈련 2.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따른 교육 3.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과정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제56조(학년구분) ① 재적학년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는 해당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본 교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table><tr><th>과정별학년</th><th>공학사과정 (150학점)</th><th>경영학사과정 (140학점)</th><th>고용학사과정 (150학점)</th></tr><tr><td>1학년</td><td>38학점</td><td>35학점</td><td>38학점</td></tr><tr><td>2학년</td><td>75학점</td><td>70학점</td><td>75학점</td></tr><tr><td>3학년</td><td>112학점</td><td>105학점</td><td>112학점</td></tr><tr><td>4학년</td><td>150학점</td><td>140학점</td><td>150학점</td></tr></table> 제57조(졸업연구) ① 졸업예정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졸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되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이란 논문 또는 실험·실습작품을 말한다. ③ 졸업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졸업연구 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졸업)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과정별학년	공학사과정 (150학점)	경영학사과정 (140학점)	고용학사과정 (150학점)	1학년	38학점	35학점	38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75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112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150학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에 따른 조문 삽입
과정별학년	공학사 과정(150학점)	경영학사 과정(140학점)																																			
1학년	38학점	35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과정별학년	공학사과정 (150학점)	경영학사과정 (140학점)	고용학사과정 (150학점)																																		
1학년	38학점	35학점	38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75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112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150학점																																		

현행	개정(안)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5.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②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7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④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제46조의2(조기졸업) ① 7학기 이내에 제46조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 제46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 이상 취득 2.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예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3.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 통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다. 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 할 수 없다. 제46조의3(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① 제46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 제7조의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5. 제51조 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②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7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④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제59조(조기졸업) ① 7학기 이내에 제58조 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 이상 취득 2.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예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3.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 통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① 제58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 제15조의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졸업연기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총장이 허가	

현행	개정(안)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졸업연기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운영에관한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졸업의 취소) 졸업한 자로서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졸업을 취소한다. 제9장 시험·성적 제49조(시험)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 및 과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50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성적분류 및 제출) ① 성적등급비율을 적용받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원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table><tr><th>원점수</th><th>등급</th><th>평점</th><th>원점수</th><th>등급</th><th>평점</th></tr><tr><td>95 -100</td><td>A +</td><td>4.5</td><td>70 - 74</td><td>Co</td><td>2.0</td></tr><tr><td>90 - 94</td><td>Ao</td><td>4.0</td><td>65 - 69</td><td>D+</td><td>1.5</td></tr><tr><td>85 - 89</td><td>B+</td><td>3.5</td><td>60 - 64</td><td>Do</td><td>1.0</td></tr><tr><td>80 - 84</td><td>Bo</td><td>3.0</td><td>0 - 59</td><td>F</td><td>0.0</td></tr><tr><td>75 - 79</td><td>C+</td><td>2.5</td><td></td><td></td><td></td></tr></table> ② 성적등급이 "A+" 내지 "Do" 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급제는 “S+”(탁월·95점) 혹은 "S"(우수·90점)", 낙제는 "U(0점)"로 표시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를 매 학기 성적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2조(성적변경 등)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잘못 처리된 성적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정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작성,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이내	원점수	등급	평점	원점수	등급	평점	95 -100	A +	4.5	70 - 74	Co	2.0	90 - 94	Ao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o	1.0	80 - 84	Bo	3.0	0 - 59	F	0.0	75 - 79	C+	2.5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운영에관한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졸업의 취소)졸업한 자로서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졸업을 취소한다. 제4절 시험·성적 제62조(시험)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 및 과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63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성적분류 및 제출) ① 성적등급비율을 적용받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원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table><tr><th>원점수</th><th>등급</th><th>평점</th><th>원점수</th><th>등급</th><th>평점</th></tr><tr><td>95 -100</td><td>A +</td><td>4.5</td><td>70 - 74</td><td>Co</td><td>2.0</td></tr><tr><td>90 - 94</td><td>Ao</td><td>4.0</td><td>65 - 69</td><td>D+</td><td>1.5</td></tr><tr><td>85 - 89</td><td>B+</td><td>3.5</td><td>60 - 64</td><td>Do</td><td>1.0</td></tr><tr><td>80 - 84</td><td>Bo</td><td>3.0</td><td>0 - 59</td><td>F</td><td>0.0</td></tr><tr><td>75 - 79</td><td>C+</td><td>2.5</td><td></td><td></td><td></td></tr></table> ② 성적등급이 "A+" 내지 "Do" 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급제는 “S+”(탁월·95점) 혹은 "S"(우수·90점)", 낙제는 "U(0점)"로 표시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를 매 학기 성적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성적변경 등)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잘못 처리된 성적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정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작성,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이내	원점수	등급	평점	원점수	등급	평점	95 -100	A +	4.5	70 - 74	Co	2.0	90 - 94	Ao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o	1.0	80 - 84	Bo	3.0	0 - 59	F	0.0	75 - 79	C+	2.5				현행과 동일
원점수	등급	평점	원점수	등급	평점																																																																					
95 -100	A +	4.5	70 - 74	Co	2.0																																																																					
90 - 94	Ao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o	1.0																																																																					
80 - 84	Bo	3.0	0 - 59	F	0.0																																																																					
75 - 79	C+	2.5																																																																								
원점수	등급	평점	원점수	등급	평점																																																																					
95 -100	A +	4.5	70 - 74	Co	2.0																																																																					
90 - 94	Ao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o	1.0																																																																					
80 - 84	Bo	3.0	0 - 59	F	0.0																																																																					
75 - 79	C+	2.5																																																																								

현행	개정(안)	
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 신청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승인한다. ③ 학생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F" 또는 "U"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원을 작성,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I(미완)"로 처리하고,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응시하지 아니하면 "F"로 처리한다.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한다. 제54조(출석의무)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징계 제55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하거나 학기당 3과목 또는 6학점이상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 신청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승인한다. ③ 학생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F" 또는 "U"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원을 작성,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I(미완)"로 처리하고,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응시하지 아니하면 "F"로 처리한다.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한다. 제67조(출석의무)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포상·징계 제6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하거나 학기당 3과목 또는 6학점이상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제13장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제66조(위탁생) ① 정부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원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③ 위탁생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정원의 입학) 위탁생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8조(학력평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특별학생) ①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이하 “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3. 학부(과)장의 추천서 ② 특별학생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비학위과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교류학생) 본 대학과 국내 다른 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 학생에게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조의2(장애학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학칙준용) 위탁생과 외국인 및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절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제71조(위탁생) ① 정부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원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③ 위탁생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정원의 입학) ① 위탁생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특별학생) ①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이하 “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3. 학부(과)장의 추천서 ② 특별학생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비학위과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교류학생) 본 교와 국내 다른 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에게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장애학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학칙준용) 위탁생과 외국인 및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현행 제68조(학력평가)를 개정안 제72조(정원의 입학)에 반영
제14장 공개강좌 제72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제7절 공개강좌·학점은행제 제77조(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의한다. 제73조(부설 연수과정) ① 산업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력을 널리 교육하기 위하여 부설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부설 연수과정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장 학점은행제 제90조(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본 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따른다. 제91조(학점은행제 학습과정 등) 본 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중 본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총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산업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력을 널리 교육하기 위하여 부설 연수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학점은행제) ①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중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총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 제73조(부설 연수과정)를 개정안 제77조(공개강좌)에 반영 조문 정리
제17장 학생활동 제84조(학생회) ① 본 대학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5조(학생지도) ①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학생지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 개최 시간,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절 학생활동 제79조(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0조(학생지도) ①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1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 개최시간·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1.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 20인 이상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2. 교내에 광고 및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4.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 제87조(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8조(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및 소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 20인 이상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2. 교내에 광고 및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4.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 제82조(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3조(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및 소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입학	【제6장 학사운영(대학원)】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대학원학칙 제6조(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학위 과정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나.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2. 박사학위 과정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다만, 특수·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3. 석·박사통합 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 ②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제7조(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가. 입학 지원서(소정양식)	제84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가. 4년제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2. 박사과정 가.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만, 특수·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함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②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있다.	조문 정리

현행	개정(안)	
나. 대학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다만,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출신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 지원서(소정양식) 나.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다만,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석사학위 과정의 성적증명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대학원학칙 제9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형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제외 또는 통합하여 전형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2.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3. 신체검사 ③특별전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학칙 제10조(비동일계지원) 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학원학칙 제8조(외국인 및 위탁생) 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5조(입학전형)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비동일계지원) 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7조(외국인 및 위탁생) 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 정리 현행과 같음
제3장 등록·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 및 수료 ▶대학원학칙 제16조(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학칙 제17조(수료학점) ①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②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③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논문	제2절 교육과정·수료 제88조(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수료학점)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②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③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점)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점)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논문대체학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학칙 제18조(학점취득) ① 석사 및 박사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대학원학칙 제19조(학점이전 및 교류) ①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다. ②전 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다만,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원학칙 제20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한다. ▶대학원학칙 제20조의2(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성적 ▶대학원학칙 제21조(학업성적)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표기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th>점 수</th><th>평 점</th></tr> </thead> <tbody> <tr> <td>A+</td><td>95~100</td><td>4.5</td></tr> <tr> <td>Ao</td><td>90~94</td><td>4.0</td></tr> <tr> <td>B+</td><td>85~89</td><td>3.5</td></tr> <tr> <td>Bo</td><td>80~84</td><td>3.0</td></tr> <tr> <td>C+</td><td>75~79</td><td>2.5</td></tr> <tr> <td>Co</td><td>70~74</td><td>2.0</td></tr> <tr> <td>D</td><td>0~69</td><td>0</td></tr> </tbody> </table> ②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논문대체학위 원칙)으로 한다. ④ 수료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학점취득) ①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② 석사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91조(학점 이전 및 교류) ①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르되,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2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1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 제9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성적 제94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표기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점수</th><th>평점</th></tr> </thead> <tbody> <tr> <td>A+</td><td>95~100</td><td>4.5</td></tr> <tr> <td>Ao</td><td>90~94</td><td>4.0</td></tr> <tr> <td>B+</td><td>85~89</td><td>3.5</td></tr> <tr> <td>Bo</td><td>80~84</td><td>3.0</td></tr> <tr> <td>C+</td><td>75~79</td><td>2.5</td></tr> <tr> <td>Co</td><td>70~74</td><td>2.0</td></tr> <tr> <td>D</td><td>0~69</td><td>0</td></tr> </tbody> </table>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현행과 같음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현행	개정(안)	
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대학원학칙 제22조(이수학점) 학점은 Co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②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전공의 변경 ▶대학원학칙 제26조(전공의 변경) ①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대학원학칙 제27조(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주임교수의 승낙서	②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제95조(이수학점) ① 학점은 Co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 제4절 전공의 변경 제96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97조(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주임교수의 승낙서	현행과 같음
제7장 공개강좌·연구생 ▶대학원학칙 제28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제29조(연구생의 자격) 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2.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대학원학칙 제30조(연구생의 전형 등) ①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④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절 공개강좌·연구생 제98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9조(연구생의 자격) 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2.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100조(연구생의 전형 등) ①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④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u>별지서식2</u>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대학원학칙 제31조(조직) ①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팀장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학과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조교 제외)을 둔다. ▶대학원학칙 제32조(대학원주임교수 및 지도논문교수) ①각 학과마다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임교수는 학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②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논문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6절 주임교수·지도교수 제101조(주임교수) ①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학과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02조(지도교수) ① 각 학과에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③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문 삭제 조문 정리
제9장 학생활동 및 상벌 ▶대학원학칙 제37조(학생회) ①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둔다. ②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사업, 예.결산 등) 및 회칙의 제·개정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대학원학칙 제38조(상벌) ①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③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절 학생활동·상벌 제103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업 및 예결산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제104조(상벌)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③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수정 현행과 같음
제18장 자체평가 제89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체평가】 제105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20장 학칙개정 제93조(학칙의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8장 학칙개정】 제106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장 보칙 제94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7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은 폐지한다. ② 개정 전 학칙과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 제반사항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2021년 2월 28일 이전 학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학칙에도 적용하되,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제1호 : 제3조 관련)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						(별표 제1호 : 제3조 관련)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									
2016학제		2017학제		2018-2020학제		비고	2017학제		2018-2020학제		2021학제		2022학제		비고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모집단위명	정원	
기계공학부	135	기계공학부	135	기계공학부	135		기계공학부	135	기계공학부	135	기계공학부	135	기계공학부	129	- 학부(과) 전공 및 트랙 개정 사항 반영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친환경자동차에너지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시스템설계제조전공	(45)	
- 지능형시스템전공	(45)	- 지능형시스템전공	(45)	- 지능형시스템전공	(45)		- 지능형시스템전공	(45)	- 지능형시스템전공	(45)	- 스마트모빌리티트랙	(45)	- 스마트모빌리티트랙	(4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3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29	
- 생산시스템전공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생산시스템전공	(45)	- 생산시스템전공	(43)	
- 제어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5)	- 제어시스템전공	(43)	
- 디지털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45)	- 디지털시스템전공	(43)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3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29	
- 전기공학전공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기공학전공	(45)	- 전기공학전공	(43)	
- 전자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5)	- 전자공학전공	(43)	
- 정보통신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45)	- 정보통신공학전공	(43)	
컴퓨터공학부	135	컴퓨터공학부	135	컴퓨터공학부	135		컴퓨터공학부	135	컴퓨터공학부	135	컴퓨터공학부	135	컴퓨터공학부	129	
- 컴퓨터H/W전공	(45)	- 컴퓨터H/W전공	(45)	- 컴퓨터H/W전공	(45)		- 컴퓨터H/W전공	(45)	- 컴퓨터H/W전공	(45)	- 스마트IoT트랙	(45)	- 스마트IoT트랙	(45)	
- 컴퓨터S/W전공	(45)	- 컴퓨터S/W전공	(45)	- 컴퓨터S/W전공	(45)		- 컴퓨터S/W전공	(45)	- 컴퓨터S/W전공	(45)	- 소프트웨어트랙	(45)	- 소프트웨어트랙	(45)	
- 스마트 IT전공	(45)	- 스마트 IT전공	(45)	- 스마트 IT전공	(45)		- 스마트 IT전공	(45)	- 스마트 IT전공	(45)	- 시트랙	(45)	- 시트랙	(45)	
디자인건축공학부	90	디자인·건축공학부	90	디자인·건축공학부	90		디자인·건축공학부	90	디자인·건축공학부	90	디자인·건축공학부	90	디자인·건축공학부	86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 반영 및 타 학부(과) 정원 변경 사항 반영
- 디자인공학전공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디자인공학전공	(45)	- 디자인공학전공	(43)	
- 건축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45)	- 건축공학전공	(43)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90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6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5)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43)	
- 응용화학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45)	- 응용화학공학전공	(43)	
산업경영학부	126	산업경영학부	116	산업경영학부	116		산업경영학부	116	산업경영학부	116	산업경영학부	116	산업경영학부	112	
- 인력경영전공	(63)	- 산업경영전공	(58)	- 산업경영전공	(58)		- 산업경영전공	(58)	- 산업경영전공	(58)	- 융합경영전공	(58)	- 융합경영전공	(56)	
- 기술경영전공	(63)	- 혁신경영전공	(58)	- 혁신경영전공	(58)		- 혁신경영전공	(58)	- 혁신경영전공	(58)	- 데이터경영전공	(58)	- 데이터경영전공	(56)	
		교양학부	-	교양학부	-										
문리HRD학부	-	HRD학과	-	HRD학과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36	
				융합학과	-		교양학부	-	교양학부	-	교양학부	-	교양학부	-	
							HRD학과	-	HRD학과	-	HRD학과	-	HRD학과	-	
7학부(18전공)	846	7학부(18전공)	836	7학부(18전공)	836		7학부(18전공)	836	7학부(18전공)	836	7학부(18전공)	836	7학부(18전공) 1학과	836	

(별표 제2호 : 제46조 관련) 학부(과)별 수여대상 학위				(별표 제2호 : 제46조 관련) 학부(과)별 수여대상 학위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에 따른 고용학사 추가
학 부(과)		학위수여종별	비 고	학 부(과)		학위수여종별	비 고	
기계공학부		공 학 사		기계공학부		공 학 사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공 학 사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공 학 사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공 학 사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공 학 사		
컴퓨터공학부		공 학 사		컴퓨터공학부		공 학 사		
디자인·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공 학 사		디자인·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공 학 사		
	건축공학전공	공 학 사			디자인·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공 학 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공 학 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공 학 사		
산업경영학부		경영학사		산업경영학부		경영학사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고용학사		